실손의료비보장 다이렉트계약 전환제도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① 이 특별약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전환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2년 4월 29일 이후 판매되는 다이렉트 실손의료보험(계약전환용)(이하 「전환후 계약」이라 합니다)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
2. 전환전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전환후 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가 전환일 직전 1년간 발생하지 않은 계약
3. 전환전 계약이 다이렉트 채널 상품인 계약

② 제1항의 전환전 계약과 전환후 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전환전 계약>

2021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유효한 보험계약
다만,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합니다.

제2조 (전환후 계약의 보장종목 및 보장내용)

전환후 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 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환후 계약과 전환전 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하여 드립니다.

제3조 (전환후 계약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전환후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후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전환전 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3조(전환후 계약의 보장개시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의 최대 재가입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제5조 (계약전환의 무효)

제3조(전환후 계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후 계약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1. 전환후 계약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
2. 전환후 계약의 보통약관 「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3.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4. 전환후 계약의 보통약관 「계약의 무효」 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된 경우

제6조 (계약전환의 철회)

① 전환후 계약의 보통약관 「청약의 철회」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5조(계약전환의 무효) 1호에 따라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후 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전환전 계약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전환후 계약에도 효력이 계속됩니다.